

의안번호	2207528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5.3.31.
추계번호	25B02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음(제3항)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안 제21조제1항) 고용노동부는 현행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¹⁾에 근거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신고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시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표 1] 2020~2025 고용유지지원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현액	2,647,618	1,855,247	596,901	197,220	71,372	70,205
결산	2,277,893	1,281,774	463,802	126,802	—	—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됨
 - － 이 중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 및 휴직수당²⁾의 3분의 2를 지급(대규모 기업은 2분의 1 또는 3분의 2)하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의 50%(1일 한도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수준이 결정됨

1)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 휴업수당의 1/2 또는 2/3	*1일 6.6만원 (연 180일)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기업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 휴업수당의 2/3 또는 3/4	*1일 우선지원 7만원, *1일 대규모 6.6만원 (연 180일)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5.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임금³⁾”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통해 향후 시행령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⁴⁾를 기준으로 하려는 취지임을 밝힘
- 현행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여부가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평균임금과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지원수준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재정소요가 변화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법상 “임금”과 차이가 발생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재정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곤란
 -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재정 소요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임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안 제21조제3항)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⁵⁾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와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규정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⁶⁾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및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음⁷⁾

○ 개정안은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규정된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대통령령에서 지원 확대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자의 규모와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

5)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5호)

제6조(지원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과 달리 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지원금
2. 특별연장급여
3. 전직·재취업 및 창업 지원
4.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

[참고자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하는 사업

- (지원요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지원대상)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제한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에 대한 보전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단, 무급 지원유형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은 대상근로자에게 지급
 - 유형별 고용유지조치 이행 조건

유급	① 휴업	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휴업·휴직기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② 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① 휴업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 ▲ 50% 이상 (19인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업기간 금품 미지급(또 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② 휴직	직전 1년 이내 3개월*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기간 금품 미지급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지원절차)

